##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9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김준혁ㆍ이수진ㆍ김문수

안규백 · 서미화 · 박희승

박지원 • 복기왕 • 이언주

박정현 • 박해철 • 김기표

박지혜・권칠승・조 국

부승찬 • 오세희 • 채현일

염태영 • 허성무 • 이광희

김 윤・김주영・강유정

송옥주 · 최민희 · 추미애

한병도 • 정성호 • 김영화

의원(3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이사장은 한국사 또는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주로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서양사학을 전 공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로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 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8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 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이사장으로 임명하여서는 아 니 된다.

교육부장관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이사의 임명권자는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 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이사를 해임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② (생 략)	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
	<u>♥</u> )
③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	3
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	<u>대통령은 일</u>
<u>설&gt;</u>	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
	민사관을 정당화 · 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
	를 이사장으로 임명하여서는
	<u>아니 된다.</u>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4
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후단 신설>	<u>교육부장관은</u>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u>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u>
	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ㆍ직원의 <u>결격사유</u> ) (생	제8조(임ㆍ직원의 <u>결격사유 등</u> )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 <신 설>

음)

② 이사의 임명권자는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 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이사를 해임하여야 한 다.